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6월 26일

○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3. 제안이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 설 : 7건 (별표1)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 (환경정책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건)
- (수질관리과) 물놀이형 수영시설 신고 및 관리 등 (2건)

○ 삭 제 : 5건

< 법령에 따른 권한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

- (세정과) 도세 징수유예 등(3건) ※충북 도세기본조례 제3조
-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 (1건)
※ 산림보호법 제24조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조항 폐지 >

-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1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96건 (별표1)

< 법령개정 사항 반영 >

- (경제정책과)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 등 (5건)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근거 법 조항 및 순서 등 위임사무 일제 정비 등 >

- 식의약안전과(10건), 유기농산과(8건), 경제정책과(11건), 산림녹지과(8건), 건축문화과(2건), 도로과(6건), 교통물류과(16건), 치수방재과(27), 환경정책과(3건)

5. 검토의견

- 위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무는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집행,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앞으로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없는지와 시·군에 재정이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위임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